

광주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2567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9. 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1.

주 문

- 피고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판사 윤봉학

별지